

발 간 문

안녕하십니까?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원은 경제·경영·산업 등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육성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각 분야의 최고의 연구진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나날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아직 담당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널리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원가계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정부원가계산제도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자치단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 1.

이사장 이 진 구

목 차

제 1 장 원가계산의 기초

- 1. 원가계산의 의의와 목적 3
- 2. 원가계산의 발전과정 6
- 3. 원가계산제도 8

제 2 장 정부원가계산제도

- 1. 개념 13
- 2. 정부원가계산의 체계 21
- 3. 원가계산의 원칙 22
- 4. 원가계산의 종류 24
- 5. 정부원가계산 관련 유권해석 26

제 3 장 정부원가계산 실무

- 1. 정부원가계산의 비목구성 35
- 2. 비목별 가격결정방법 36
- 3. 제조 원가계산 실무 44
- 4. 공사 원가계산 실무 55
- 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실무 77

제 4 장 예정가격 작성 실무

1. 예정가격의 개념	83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87
3. 예정가격 기초조사	89
4. 예정가격 작성절차	96

제 5 장 부록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	101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23
3. 기술용역입찰유의서	141
4.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 관한 준칙 중 별표	149
5. 공사업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157
6. 노임단가기준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등	162
7.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칙	165

Chapter

1

원가계산의 기초

1. 원가계산의 의의와 목적
2. 원가계산의 발전과정
3. 원가계산제도

제1장 원가계산의 기초

1. 원가계산의 의의와 목적

1) 원가(原價)

- 제품의 본래의 가치
-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
- 생산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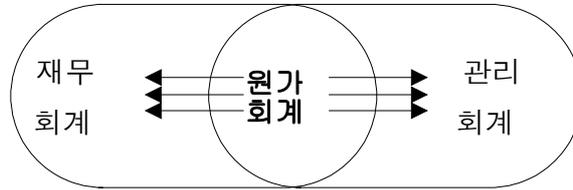
2) 원가계산과 원가회계

- 원가계산(costing) : 제품의 원가를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 원가회계(cost accounting) : 복식부기에 실어서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
- 일반적으로 원가계산과 원가회계를 동의어로 사용함.

3) 원가계산

- 원가를 계산하는 수단
-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위해 소비된, 또는 소비되어야 할 경제재의 가치희생을 측정하는 경영관리수단
- 원가계산대상[급부(給付)] 즉, 무엇을 대상으로 원가를 집계 또는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제품, 서비스, 활동, 작업, 부문, 프로젝트(레포트), 프로그램, 고객으로 구분

4)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 재무회계 : 외부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

○ 관리회계 : 내부경영관리자를 위한 회계

⇒ 외부이해관계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경영관리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원가계산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모두 관련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구분>

항목 \ 분야	재무회계	관리회계
1. 주요정보이용자	외부이해관계자	내부이해관계자
2. 목적	제조에 의한 외부보고	경영자의 의사결정
3. 보고서의 형식	재무제표 양식	목적에 적합한 특수보고서
4. 정보의 특성	과거의 사건에 의한 객관적 정보	미래지향적 주관적 정보
5. 준거규정	기업회계기준, 원가계산준칙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없음(기업나름대로의 고유 양식)

※ (1) 계획(planning)- 계획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야할 일련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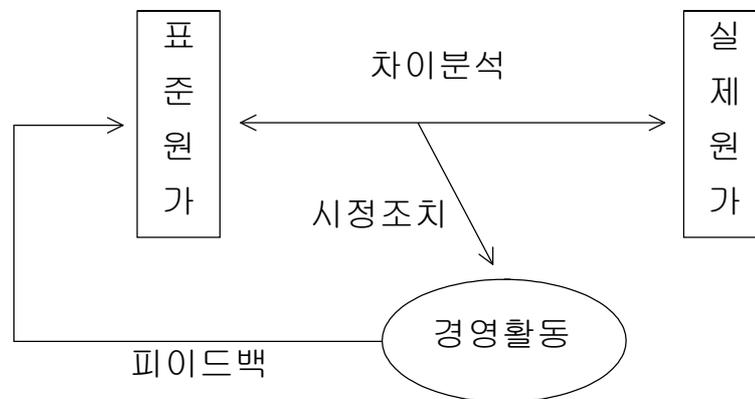
(2) 통제(control)- 계획에 따라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것

⇒ 경영활동의 계획과 통제에 도움을 주는 원가계산의 관리회계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5) 원가계산의 목적

회계의 영역	원가정보이용자	구체적 목적
재무회계	외부이해관계자	(1) 재무제표작성
관리회계	내부경영관리자	(2)가격계산 (3)원가관리 (4)이익관리 (5)경영의사결정 (6)영업관리 (7)물류관리

- ① 재무제표작성목적- 재무회계측면, 매출원가산정,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원가산정
- ② 가격계산- 관리회계측면, 원가가산방식(원가+ 이익)
- ③ 원가관리- 원가계획-> 원가통제



<표준원가에 의한 원가관리 프로세스>

- ④ 이익관리: 이익계획(기업예산편성-원가데이터 필요) → 이익통제(예산통제)
- ⑤ 경영의사결정- 경영자가 하는 의사결정

※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대체안(alternatives) 중에서 최선의 안(案)을 선택하는 것

- 업무적 의사결정: 개별제품의 가격결정, 신제품의 추가, 구제품의 폐기 → 중간관리자(middle manager)
- 전략적 의사결정: 신제품개발계획, 경영입지, 설비투자계획, 요원 계획 → 최고경영자
- ⑥ 영업관리: 영업비(판매비와 관리비) 관리
- ⑦ 물류관리: 물류비관리

2. 원가계산의 발전과정

원가계산의 발전과정	시대구분
1 원가발견형 원가계산	15,6세기부터 1885년경까지
2 제품원가계산 지향형 원가계산	1885년-1920년경까지
3 경영관리 지향형 원가계산	
(1) management control 지향형 원가계산	1920년-1945년경까지
(2) 경영의사결정 지향형 원가계산	1945년-1985년경까지
(3) 정보지향형 원가계산	1985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1) 원가발견형 원가계산(15 ~ 16세기경)

- 임금과 재료비만 집계하며, 주로 가내공업으로서 주인이 생산기술자이므로, 원재료비와 본인의 인건비만 계산

2) 제품원가계산 지향형 원가계산(1885년 ~ 1920년경)

- 산업혁명이후 철, 석탄공업, 섬유산업, 철도업, 화학공업 등이 발달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이 중시되었음.
- 따라서 상업부기를 공업부문에 적용하여 공업회계를 위한 부기체계가 성립된다.

3) 경영관리 지향형 원가계산(1920년 ~ 최근)

① 경영통제(management control) 지향형 원가계산

- 주어진 생산과정에서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
- 표준원가계산(차이분석) 발전- 미국
- 이익관리: 손익분기점분석, 예산통제, 변동원가계산

② 경영의사결정 지향형 원가계산

- 목적이 다르면 원가도 달라야 한다.(클라크, 1923년)
- 특수원가개념이 논의
- 경영의사결정중시: 계속되는 기술혁신과 그에 수반하는 생산방법의 격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의 단축, 혹은 혁신을 위한 설비투자가 빈발

③ 정보지향형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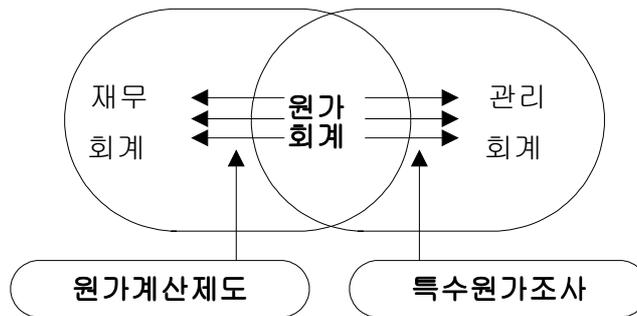
- 컴퓨터의 발전이 정보시스템을 비약적으로 발전
- 1960년대 후반의 MIS(경영정보시스템), 1970년대의 DSS(의사결정지원시스템), 1980년대에는 SIS(전략적정보시스템)에 대한 원가계산의 역할이 논의
- 1980년대 후반에는 소프트웨어원가계산 도입
- 경영관리자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도 중시

3. 원가계산제도

1) 원가계산과 재무회계의 관계

구 분	원가회계		재무회계
재무회계→원가회계	재료비 계산	←	재무회계의 원재료 수불기록 사용
	노무비 계산	←	종업원의 급여계산 활용
원가회계→재무회계	손익계산서	←	매출원가산정, 판매비와 관리비 계산
	대차대조표	←	제품, 반제품,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

2) 원가계산제도(재무회계)와 특수원가조사(관리회계)



- 원가계산제도는 원가계산준칙상의 재무회계적 목적만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원가조사(관리회계)는 재무회계기구 밖에서 수시 단편적으로 원가를 계산한다.

<원가계산제도와 특수원가조사의 차이>

구 분	원가계산제도	특수원가조사(관리회계)
목 적	재무제표 작성, 원가관리 및 예산관리목적 등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일정한 계산질서	경영의사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가통계적 기술적 계산
재무회계기구와의 결합관계	재무회계기구와 유기적으로 결합	재무회계기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원가계획이나 원가분석
계산빈도	매일 계속적으로 실시	필요에 따라 실시
원가성질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지출원가	기회원가 등 경영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원가

3) 원가계산제도의 종류

- ① 실제원가계산제도: 원가계산시 실제원가를 이용하여 계산
- ② 표준원가계산제도: 원가계산시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계산
- ③ 변동원가계산제도: 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 변동제조원가만을 가지고,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4) 원가계산의 종류와 순서

- ① 원가계산기간 : 회계기간에 따라 1년
- ② 원가계산의 종류와 순서
 - 비목별원가계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록·계산
 - 부문별원가계산: 원가관리와 원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원가의 발생장소별 계산
 - 제품별원가계산: 원가를 부담자별로 계산하는 절차

1. 개념
2. 정부원가계산제도의 체계
3. 원가계산의 원칙
4. 원가계산의 종류
5. 정부원가계산 관련 유권해석

제2장 정부원가계산제도

1. 개념

1) 의의

- 정부(공공단체)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에 대하여 가격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실례가격의 조사가 일반적인 가격조사방법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는 품목에 따라 시증거래가 적거나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특히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물품구매·용역·공사의 경우 그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예정가격의 결정을 원가계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원가계산의 법적근거

-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경우 원가계산으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되어 있다.

3) 원가계산의 목적 및 전문기관의 필요성

(1) 정부원가계산의 목적

- 정부원가계산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기업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서는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내의 적정한 이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기관에 대하여는 정확한 원가계산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와 원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정가격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전문기관의 필요성

-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가계산 용역 전문기관의 필요성은 ①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② 대외적 신뢰도 향상, ③ 감사기능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동 법률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3) 원가계산 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 장관 인가를 받은 “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재된 용역기관에 대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요건심사를 생략하고 용역의뢰를 할 수 있다.

<원가계산 용역의뢰 전문기관 요건>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요건심사내용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이상인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기사 이상인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부기자격 2급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이상일 것
예외규정	※ 단,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한 “한국원가관리협회” 등재 기관에 대하여는 상기 요건심사를 면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아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 부실원가계산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다)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 수령시 당해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 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내용이 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중점검토사항>

구 분	내 용
노무비 항목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을 제수당에 다시 계상여부 ·퇴직급여총당금 산정후 퇴직공제부금을 다시 계상여부 ·퇴직급여총당금 과다 산정여부
경비 항목	·당해 제조·공사와 관련없는 경비 포함여부 확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대상업무>

구 분	대상업무
제조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원가계산 업무 •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계획 수립 업무 • 제조·구매, 수입물자, 인쇄비 산정에 관한 원가계산 업무 • 임대 수수료(단가) 산정
공사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조성에 따른 공사비 산정 • 연약지반, 암석지반, 차수벽, 방음벽, 지장물철거 공사비산정 • 재개발, 재건축, 일반건물 철거비 산정 •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등 공사비 산정 • 실시설계 검토 확인 원가계산 • 각종 통계에 의한 예가 작성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FT WARE 원가계산 • 시설물 유지관리 원가계산 • 지하철 광고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등 용역발주를 위한 원가계산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 견인자동차 운영관리(견인사업) •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구민회관, 시민회관) • 근로자(노인,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 국민관광지(유원지 관리) • 시·군립 도서관 운영 • 방역소독사업 •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 환경사업소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 (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다)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 (마)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운영 (바) 소각시설 관리운영 (사)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아) 재활용품 수집 운반 (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구 분	대상업무
<p>민간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보안등 관리사무 • 화장장 관리운영 • 썰매장 관리운영 • 상·하수도 검침 사무
<p>학술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관련 사업타당성연구 • 경영분석 및 경영진단 •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산업경제발전 방안연구 • 제도개선 방안연구 • 경영관리개선을 지향하는 표준원가산정 및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 폐기물기본계획 수립,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 • 민간위탁 관리용역 타당성 및 관리용역 능력평가 조사연구 •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시설 운영방안 연구
<p>공공요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요금 • 우편요금 • 상·하수도요금 •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등 교통관련 요금 • 도시가스요금 •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산정 • 유료터널, 도로 사용료

4) 정부구매제도의 영향

- 정부구매는 정부예산 중 사업비의 규모가 60%이상이고,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규모를 고려하면 그 전체적인 규모가 약 70조에 이른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정부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정부구매제도의 영향은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도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은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부원가계산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5) 기업회계와의 차이점

- 정부원가계산제도가 앞에서 제1장 원가계산의 기초에서 서술한 기업회계 원가계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 정부원가계산제도도 원래 기업회계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출발하였으나, 정부회계의 특성인 공공성 및 공익성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며 별도의 체계를 구성하여 왔다.

<정부원가계산과 기업원가계산의 차이>

구분	정 부 회 계	기 업 회 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선정을 위한 예정가격결정의 자료 제공 ◦정부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추구 ◦공공성, 공익성, 행정능률성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 ◦가격예산, 원가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기업의 영리성 추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원가계산 방식 ·발생될 원가를 예정하여 산출 ·불특정다수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개별 원가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원가계산 방식 ·기업의 실발생비용을 반영처리 ·당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원가계산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셈적용, 설계서 이해 등 공학적 지식과 회계학 및 법학적 지식을 동시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발생 원가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처리
원가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 ·경비비목과 관련이 있고 예측가능 비목만 인정(제조분야:21항목, 공사분야:25항목)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승율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 발생원가 비목을 모두인정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임원급료 등 27개 비목 ·지급이자와 할인료 등 23비목 ·경비는 실발생 비목을 모두인정

- 따라서 정부원가계산제도와 기업원가계산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성, 공익성, 행정능률성과 사전원가계산방식이며, 원가계산시 품셈적용, 설계서 이해 등 공학적 지식과 회계학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며, 관련 법령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2. 정부원가계산의 체계

1) 기업원가계산 구조(일반적인 원가계산의 구조)

				이 익	부가세	판매가격 (세후가격)
		일반관리비 판매직접비 판매간접비			제품가격 (세전가격)	
		제조간접비	총 원 가 (판매원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 경비	직접원가 (기초원가)	제조원가 (공장제품원가)				

- 직접원가(제품생산3요소)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 : 직접원가 + 제조간접비
- 총원가(Total cost) : 제조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판매가격(Selling cost) : 총원가 + 이익 + 부가세

2) 정부원가계산의 구조

				이 윤	부가세	예정가격	
				일반관리비	총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제조원가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 비							

-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총원가(Total cost) :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
- 예정가격 : 총원가 + 부가세

3. 원가계산의 원칙

- 원가계산이 그 임무를 온전히 완수하려면 자의적인 계산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설정되어있는 기준에 따라 일정한 원칙을 지켜서 계산되어야 한다.
- 참고로 미국회계학회(A.A.A.)의 “원가개념 및 기준”에 보고된 원가계산원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진실성의 원칙

경영의사의 결정에 대한 건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은 되도록 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객관성의 원칙

유익한 원가계산을 행하기 위해서는 계산은 되도록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 일관성의 원칙

경영활동의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원가계산은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라. 직접부과의 원칙

특정대상을 위한 한층 유용한 원가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가는 가능한 그 계산대상에 직접 부과되어야 한다.

마. 관련성의 원칙

가장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은 관련하는 당해 문제 또는 목적에 대해서 적절한 것이라야 한다.

바. 중요성의 원칙

소요된 노력에서 얻어진 효과를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에서는 중요한 모든 자료가 그에 맞게 취급되어야 한다.

사. 예외관리의 원칙

원가관리를 행하는데 있어서 경영관리자에게 유용하도록 원가계산에서는 경영상의 업적표준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표시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아. 원가보고의 원칙

유용한 원가관리보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숫자는 경영관리상의 책임구분에 따라서 작성 보고되어야 한다.

자. 원가수익대응의 원칙

재무회계목적에 위해서는 생산품 1단위에 든 투자액을 그 수익에 대응시키는 목적으로서 그 원가숫자의 계산이 행해져야 한다.

차. 간접비 배부기준의 선택에 관한 원칙

재무회계목적에 위해서는 간접비의 배부는 그 간접비를 발생시킨 기본적 활동과 이론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4. 원가계산의 종류

- 원가계산은 관점에 따라서 원가계산대상, 원가계산시점, 원가계산 방법, 원가계산범위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계산대상의 상이에 따라 외부원가계산과 내부원가계산으로 나누고, 또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원가계산과 사후원가계산으로 나누며, 계산방법에 따라서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으로 나누며 다시 계산범위에 따라서 전부원가계산과 부분원가계산으로 나눌 수 있다.

<원가계산의 종류>

구 분		내 용
원가계산대상	외부원가계산	·외부활동에 관한 원가계산으로 구매원가계산과 판매원가계산으로 구분 1) 구매원가계산 재료 구입가 + 재료구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임, 구입수수료, 보험료, 창고료, 관세 등의 제비용을 가산하는 원가계산(수입재료 가공업체 등) 2) 판매원가계산 제품의 원가에다 판매품의 발송운임, 포장비, 판매수수료,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가산하는 원가계산(예, 제품수출업체 등)
	내부원가계산	·기업의 내부활동인 제조활동에 관한 계산으로서 제조원가계산이라고 하며, 재료가 제조과정 이후 제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소비된 경제가치를 계산하는 것

구 분		내 용
원가계산시점	사전원가계산	·생산 착수 전에 원가를 미리 예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예정원가계산 또는 추가원가계산(Estimating Cost Accounting)이라고도 불리어진다. ·정부예정가격작성에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여 가격조사를 하고 있다.
	사후원가계산	·생산착수 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실제 원가계산(Actual Cost Accounting)이라고도 부르며, 정부원가계산에서도 일부 사후원가계산을 함.
원가계산방법	개별원가계산	·특정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원가를 직접 계산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제조업, 조선업, 기계제작비 등과 같이 종류, 규격이 다른 다수제품을 생산하는 개별 생산경영에서 채용
	종합원가계산	·일정기간에 생산된 동종제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총 원가를 계산하고 이것을 그 기간의 총 생산으로 나누어서 제품단위 원가를 계산하는 것
원가계산범위	전부원가계산	·제품의 완성을 위하여 발생한 일체의 원가요소를 포함하는 계산으로서 총 원가계산이라고도 부른다.
	부문원가계산	·특별한 목적에서 어떤 일부의 원가요소만을 계산대상으로 하는 원가계산

5. 정부원가계산 관련한 유권해석

1) 원재료의 여분을 원가 계산할 수 있는지?

- 본 건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인 인쇄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용지여분을 제조원가에 계상 할 수 있다고 보나,
- 이 경우에도 동 용지여분이 이용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추산액을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계 1525-4104. 82. 12. 17)

2) 정부노임단가직종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또는 제조, 구매계약의 경우 원가 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노무비 단가기준이 되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은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으로 구분하여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직종을 선정 결정되고 있는 바, 동 기준 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직종(고압가스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사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당해 직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발주관서에서 판단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제 125-2798. 87. 12. 19)

3) 노무비중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범위 등에 대하여

- 노무비중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급 필요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이 적의 판단할 사항이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제조부문의 경우와 같이 1월을 25일로

계상함이 타당하며, 작업중의 준비, 정비, 대기 및 뒷정리 등의 실 작업시간 인정여부는 작업여건 및 근로상황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계 1210-3295.82. 9. 25)

4) 1년미만 공사에도 상여금 계상할 수 있는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7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현행 2200. 04-105-5. 86. 7. 14.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공사기간의 장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회계 1210-326. 78. 7. 28)

5) 노무비중 상여금 등 계상에 대하여

- 회계예규 1201.04-82 제7조 제1항 단서(현행 2200.04-105-4. 86.7.14 재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은 년 400%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지급실적, 계약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동 예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수당은 소요 노무량, 단위당 기준노임, 상시종업원 및 계약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회계 1210-833. 78. 5. 6)

6) 경비비목중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의 처리는?

- 회계예규(1210.04-105-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경비는 순공사 원가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하므로 동조에서 규정한 13개 경비항목의 비용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비와 노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항목의 비용 중에서 가려내어 재료비 및 노무비 비목에 분리 계상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계 1210-4278. 84. 11. 21)

7) 운전경비중 운전자재비를 직접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운전경비중의 운전 자재비는 간접재료비로, 운전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로 계상하며, 운반비 및 가설비중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노무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운반비를 건설교통부 고시 요율에 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노무비나 간접 노무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8) 공구손료를 기계경비 비목에 계상할 수 있는지?

- 예산회계법령상 시설공사에 필요한 공구 손료는 (회계예규 1201. 04-105-1. 80. 9. 3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4조의 규정중 제3항 기계경비 비목에 해당하며, 비용산정기준은 정부표준 물품셈의 내용에 따라 계상합니다. (회계 1210-693. 82. 2. 26)

9) 운반비 계상에 대하여

- 가. 경비중의 운반비는 순 제조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조업에 있어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경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 하역, 상하차, 조작비용 등을 말하며,
- 나. 일반관리비중 운반비는 기업전체의 관리운용에 소요되어 발생하는 인사, 재무, 회계, 서무, 판매 등에 지출된 경비중의 하나로서 직접 순제조원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 1210-2361. 83. 9. 4)

10) 단가산정은 계약시점을 기준하는지?

- 물품의 제조 구매 등을 위하여 원가계산을 할 경우 재료비의 단가는 다른 법령(군수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 등 - 현행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가계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가격은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거 귀 부에서 적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 1210 - 2068. 81. 10. 6)

11) 단위당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의미는 거래실례가격 속에 당해 제품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또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가계산내용중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회계 1210 - 617. 82. 2. 20)

12) 일반관리비 내용중 상여금, 제수당 등도 포함되는지?

- 회계예규 1201. 04 - 105 -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10조 일반관리비의 내용에 대하여는 동조 비목으로 열거된 제 비목 이외에도 기업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판매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비목은 계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광고선전비, 접대비, 대손상각 이외의 비목이라도 판매비의 성질을 가진 비목은 원가계산의 비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회계 1210 - 3488. 82. 10. 18)

1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계상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고액(총원가)으로 합산하는 것은 예정가격에 적정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 원가를 구성하는 경비 등에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총원가에 따로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제 125 - 2704. 85. 10. 4)

14) 개산계약시 개산가격결정에 대하여?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제1210 - 1272. 81. 6. 1)

15) 예정가격의 사정방법은?

- 설계 담당자 등이 작성하는 예정가격기초금액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이 결정하는 예정가격의 보조 자료로서 이는 예산회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그 자체가 될 수 없는바 동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 기초금액을 사정(조정)하는 방법 또는 사정대상비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 125 - 2588. 82. 7. 20)

16) 개인맞춤 피복류 예정가격 결정특례

○ 개인 체촌 및 개인재단을 필요로 하는 장교피복류(여군포함) 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 노무비는 계약 사무처리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3호에 대한 특례로서 시중맞춤복(유사품)가공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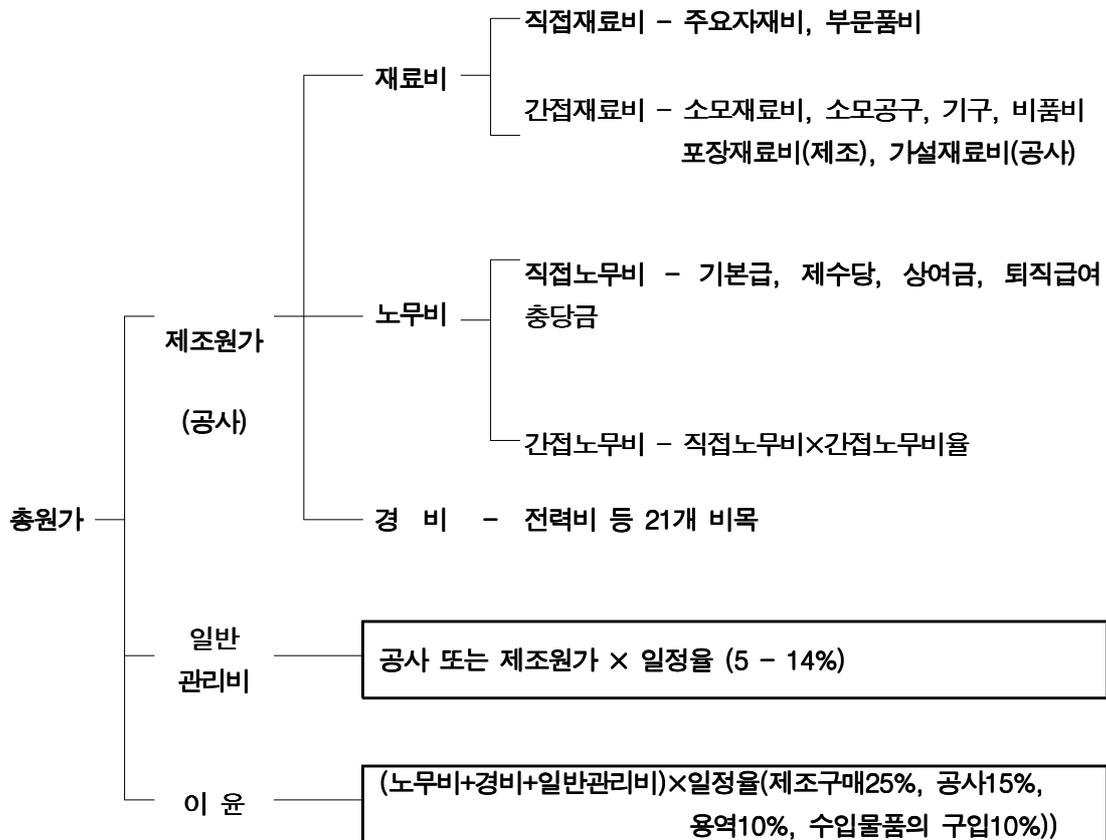
◦ 협의근거

- 발 의 : 국방부 이재 1210. 5 - 3550 (69. 9. 12)
- 동 의 : 재무부 회계 1210. 3 - 4605 (69. 9. 23)

1. 정부원가계산 비목구성
2. 비목별 가격결정방법
3. 제조 원가계산 실무
4. 공사 원가계산 실무
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실무

제3장 정부원가계산 실무

1. 정부원가계산의 비목구성



◦ 예정가격 = 총원가 + 부가가치세

2. 비목별 가격결정방법

1) 재료비

(1) 직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 부문품비 등을 말한다.

①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② 부문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구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0조 제3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 등의 가치

(2) 간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등을 말한다.

①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②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 기구, 비품의 가치

③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 그리고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한다.

2) 노무비

(1) 직접노무비

-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① 기본급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②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상여금 : 년 400%

④ 퇴직급여충당금

-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2) 간접노무비

- 직접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
하는 노무자,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left[\frac{\text{간접노무비}}{\text{직접노무비}} \right]$ 을 곱하여 계산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3) 경비

-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 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경비를 계상함에 있어 그 종류나 금액이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거나 시공하는데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원가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조경비 계산방법은 직접계산방법이나 간접배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배부하는 방법에도 가액법(직접재료비법, 직접노무비법, 직접원가법 등)시간법, 수량법 및 혼합법 등으로 구매물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일하여 적용

-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비용
 - ②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
 - ③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

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 할 수 있다.

- ④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선비는 제외)
- ⑤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
- ⑥ 기술료 : 당해 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Know How Cost)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
- ⑦ 연구개발비 :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 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 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 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 할 수 있다.

- ⑧ 시험검사비 :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 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 (다만, 자체시험 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 ⑨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물품의 생산 기간에 따라 계산
- ⑩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⑪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 약품대, 지급피복비, 건강 진단비, 급식비 (“중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 ⑫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 되는 것은 제외
- ⑬ 안전관리비 : 작업현장에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
- ⑭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한다.
- ⑮ 여비교통비, 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 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⑯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부문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 되는 것 제외)

- ⑰ 세금과 공과 :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 ⑱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 유발물질 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⑲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 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 제작비 포함)
- ⑳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4)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 원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업체의 재무제표중에서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 계상할 수 있다.
- 일반관리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광고선전비 + 접대비 + 대손상각 등)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100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 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 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8
	비금속 광물제품의 제조, 구매	12
	제 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6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의 제조, 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 구매	11
◦ 시설공사업		
	시설공사	6%
◦ 기타		
	수입물품의 구매	8%
	용역	5

5) 이윤

-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정률을 적용한다.

업	종	이윤률
○ 공 사		15%
○ 제조구매		25%
○ 수입물품의 구매		10%
○ 용 역		10%

3. 제조 원가계산 실무

1) 재료비

(1) 산정기준

-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고 재료의 원단위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후 작업설 등은 매각가치 및 이용가치를 순 실현가액으로 환산평가하여 차감한다.

$\begin{aligned} \text{재료비} &= \sum (\text{규격별 소요량} \times \text{단위당 가격}) \\ &= \text{재료비의 원단위 수량} \times \text{단위당 가격 합계액} \end{aligned}$
--

- 직접재료비 계산시는 재료의 원단위 산출을 위한 소요량 계산과 단위당 가격 적용방법이 중요하고, 간접재료비 계산시는 배부기준 선정이 중요하다.
- 직접재료비중 주요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그리고 부분품비는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비, 수입부품비, 외장재료 및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0조제3항제13호 규정(외주가공비)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를 말한다.
- 따라서 매입부품비는 물가조사 방식에 의하여 거래실레가격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고, 수입부품비는 수입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 직접재료비의 소요량 산출은 원재료의 종류, 규격, 설계도, 결산서 및 관련 부속서류 등을 검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소요량 산출시 공학적 지식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 계약상대방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손실율과 불량율도 인정한다.
- 직접재료비는 원단위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즉 재료의 원단위란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물량을 말한다.

<재료의 원단위 산정방식>

$$\text{원단위} = \text{정미소요량} \times (1 + \text{손실율}) \times (1 + \text{불량률} + \text{시료율})$$

- 물리적, 화학적 분석법
- 제조공정에서 의한 실측법
- 생산 실적자료 분석법
- 관련기관 공표자료 활용법 : 국세청표준 수율표
- 중소기업청 수출용 원자재기준 소요량

- 위의 산식은 원재료로부터 조립가공에 이르는 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따라서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가공하여 완성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손실율은 반영하지 않는다.
- 일반물자 원가계산시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율과 불량률만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시료율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외주품과 외주가공비의 구분

가. 외주품

- 특정업체에 제조의뢰하고 그 업체에서 원료 및 원재료를 구입, 가공하여 납품하는 주문부분품을 말하며, 재료비에 적용할 가격은 당해부품 납품업체가 판매한 가격(원재료 구입비 포함)을 말한다.

나. 외주가공비

- 계약대상자가 제조할 수 없거나 제조 가능하더라도 경제성 및 성능면에서 직접 제조가 불리할 경우에 원료 또는 원재료를 특정 업체에 제공하여 제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가공의뢰 하는 것을 말하며, 경비에 적용할 금액은 당해 외주가공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원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3) 거래가격에 의한 직접재료 단위당 가격 적용

- 직접재료 단위당 적용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견적 가격 등 계약 목적물 예정가격 기초조사 방법과 유사하며, 기업의 원가회계에서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재료의 투입단가를 산정한다.
- 국가계약법상의 원가계산에서는 원가계산 시점에서 물가조사를 통하여 단위당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가격정보지를 주로 활용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업체의 실구입 자료까지 확인한다.

(4) 간접재료비

○ 간접재료비는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제품과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보조(또는 소모) 재료비 : 윤활유, 접착제, 코팅재,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로서 직접 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 (2) 소모성 공·기구·비품비 : 내용연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현재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기구, 비품의 비용을 말한다.
- (3) 포장(또는 가설) 재료비 : 제품을 포장(또는 가설)하는 등에 사용되는 재료(합판재, 포대, 지대, 병, 상표, 포장용끈 등)의 비용을 말한다.

○ 또한 간접재료비는 비용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계산 한다.

○ 비용추적이 어려워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계산하는 경우란 2개이상의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간접재료 또는 소요량 측정이 곤란한 비용으로서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기업의 직전연도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제조원가명세서나 관련회계자료를 분석하여 간접재료비 배부율로 산정한다.

- (1) 간접재료비 배부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이들 중 가장 합리적이고 배부방법으로서 적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배부기준으로 선택하여 계산한다.

- (가) 직접재료비법 : 작업설, 부산물, 연산물등의 가액을 차감한 순액 기준으로 적용한다.
 - (나) 직접노무비법
 - 기초원가법 :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기준
 - (다) 직접노무(또는 기계)작업시간법
 - 기타의 방법 : 수량법, 복합법
- 직접재료비 공제항목인 작업설, 부산물 또는 연산물은 계약 목적물의 제조업자가 당해 작업설, 부산물 또는 연산물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공정가액)에서 판매부대비용 및 예상이익을 차감한 순 실현가액을 산정하여 직접재료비에서 차감한다.

2) 노무비

- 노무비는 제품별로 직접 계산하는 직접노무비와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조 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공수)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에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1년 이상 사용자)을 포함한 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text{노무비} = \sum (\text{공종별 노무량} \times \text{단위당 가격})$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공수} \times (\text{시중} \text{ 노임단가})$
--

- 노무공수 파악을 위하여는 생산조직 직·간접인원의 정확한 구분, 공정표, 생산설비 자동화 정도, 동일공정에서의 타제품 생산량, 종업원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이는 본질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은 분야이다.
- 또한 스톱워치 등으로 정미시간을 포착하여 여유시간을 가산하거나 과학적 분석기법의 동원 등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작업전표, 노임대장, 근태일보, 제품수불부, 재공품 평가서 등의 생산실적 자료를 보고 실 발생시간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1) 노임단가

-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3조에서 인정하는 통계작성 공인기관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을 적용한다.
- 공표된 시중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기본급으로서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이 포함된 상한선 개념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제수당, 상여금(년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1년에 30일분, 1년 미만 근로자 제외)등은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시중노임단가 공표기관

- 공사부문직종별 시중노임 : 대한건설협회(연 2회 공표)

- 공사부문직종별 평균노임 : 대한건설협회
- 엔지니어링사업부문노임단가기준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감리부문 : 한국건설감리협회
- 소프트웨어분야 : 정보통신부 고시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 대한측량협회
- 제조부문 노임단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 전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을 반영

(2) 직접노무비 계산방법

가) 단위작업량에 따른 소요공수 × (시중)노임단가 × (1 + a)
(a :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나) 공정별 제조공수 × 임율

다) 공정별 배치공수의 직종별 작업량(실적생산량 또는 측정량을
기준에 의하는 경우)

(3) 간접노무비의 계산

○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작업현장의 보조작업자, 현장감독자 등의 노무비로서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하여 산출함

가) 직접노무비 × 100%이하

나)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text{간접노무비} = \frac{\text{일정기간 간접노무비}}{\text{일정기간 직접노무비}} \times 100\%$$

3) 경비

- 경비 비목은 원칙적으로 21개 비목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의무 지워진 것만 추가로 인정한다.

(1) 적용 경비 비목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등 21개 비목

- 경비는 제품의 특성, 제품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직접 계산하여 부과하기도 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기도 하는데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가 크게 변동될 요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경비내역도 그 명칭보다는 실제 내용을 보고 원가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가성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동일한 명칭이라도 재료비 또는 일반관리비와 중복계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술료, 외주가공비 등과 같이 별도 계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배부계산시 그 비목을 불인정하여야 한다.

<경비의 비목별 계산방법>

구 분	내 용
직접계산하는 항목	·실발생비용을 증빙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거나 계약목적물에 실제 투입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용 ·기술료, 특허권사용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감가상각비 등
배부계산하는 항목	·계약목적물 제조에 직접 대응이 되지 않고 배부계산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경비과목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리수선비 등

(2) 경비배부를 통한 산정방식

- 경비는 상기의 비목별 계산방법중에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적용하여 직접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배분계산방법에는 직접 재료비법, 직접노무비법, 직접원가법, 기타방법 등이 있다.
- 또한 직접계산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이상 업체(수의계약의 경우는 당해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분석비율(경비비율)을 적용 배분 계산한다.

가) 직접재료비법

$$\begin{array}{l}
 \text{일정 원가계산기간의 경비합계액} \\
 \hline
 \times \quad \text{당해제품 직접 재료비} \\
 \hline
 \text{일정 원가계산기간의 직접재료비의 합계액}
 \end{array}$$

나) 직접노무비법

$$\frac{\text{일정 원가계산기간의 경비합계액}}{\text{일정 원가계산기간의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times \text{당해제품 직접 노무비}$$

다) 직접원가법

$$\frac{\text{일정 원가계산기간의 경비합계액}}{\text{일정 원가계산기간의 직접원가 합계액}} \times \text{당해제품 직접 원가}$$

라) 기타방법

- 작업시간법, 기계시간법, 수량법 등 그 밖의 경비 배부기준은 위 3가지 방법보다 제조원가의 비중이 크거나 연관성이 높은 것을 주로 사용한다.

4)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일반관리비 중에서도 그 비중이 커서 운반비나 포장비 등을 별도 계상하는 경우에는 비율계산시 제외한다.
-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한다.

5)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부가가치에 대한 이윤 개념으로서 제조원가 중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에 이윤율(상한선)을 곱하여 계산한다.

$$\text{이윤} = (\text{총원가} - \text{재료비} - \text{외주가공비} - \text{기술료}) \times \text{이윤율}$$

이윤율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

6) 부가가치세

-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계약목적물 전체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면세물품 구매시에는 업체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총원가에 가산 지급한다.
-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에서 규정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공사원가계산

1) 재료비

-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고 재료의 원단위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후 작업설 등은 매각가치 및 이용가치를 순 실현가액으로 환산평가하여 차감한다.

$$\begin{aligned} \text{재료비} &= \sum (\text{규격별 소요량} \times \text{단위당 가격}) \\ &= \text{재료비의 원단위 수량} \times \text{단위당 가격 합계액} \end{aligned}$$

- 직접재료비 계산시는 재료의 원단위 산출을 위한 소요량 계산과 단위당 가격 적용방법이 중요하고, 간접재료비 계산시는 배부기준 선정이 중요하다.
-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재료비와 부분품비로 구분된다.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6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다.
-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등은 제조원가와 동일하며, 가설재료비 등이 있다.
-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자재.

2) 노무비

- 노무비는 제품별로 직접 계산하는 직접노무비와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1)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공사 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공사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량(공수)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에 법정 체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1년 이상 사용자)을 포함한 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text{노무비} = \sum (\text{공종별 노무량} \times \text{단위당 가격})$$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공수} \times (\text{시중} \text{ 노임단가})$$

- 노무공수 파악을 위하여는 물량(노무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3조에서 인정하는 통계작성 공인기관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을 적용한다.
- 공표된 시중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기본급으로서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이 포함된 상한선 개념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인정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제수당, 상여금(년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1년에 30일분, 1년 미만 근로자 제외)등은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간접노무비

가. 직접계산방법

①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산 정 공 식>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② 계산방법

- 노무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직종의 단가는 동 기준중에서 유사한 직종의 단가를 적용한다.
-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 ㉠ 현장소장, ㉡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 노무관리원, ㉤ 자재·구매관리원, ㉥ 공구담당원, ㉦ 시험관리원, ㉧ 교육·산재담당원 ㉨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 경비원, ㉪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 그리고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또한 노무량계산서 붙임 예시 「대규모 공사의 공사현장관리사무소 인력배치도」를 참조하여 적정인원을 적의 계상한다.

나. 비율분석방법

①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하고, 위 직접노무비에 원가계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간접노무비율

<산 정 공 식>

간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즉, $\frac{\text{간접노무비}}{\text{직접노무비}}$ 를 곱하여 계산함.

② 간접노무비의 계상방법

-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상기 계상방법에 대한 보완적용방법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서 제시한 직접계상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 동 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회제2210-591(1989.3.8))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 사 종 류 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준설 등)	15.5%
	기타(전문·전기·통신 등)	15%
공 사 규 모 별 *품셈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원가기준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3) 경비

- 경비 비목은 원칙적으로 24개 비목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의무 지워진 것만 추가로 인정한다.

(1) 경비계산 비목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국민연금,공사손해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정보전비, 보상비, 안전점검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담금등

-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시험검사비 등은 경비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공사손해보험료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 총공사원가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후 총원가에 가산한다.
- 경비는 제품의 특성, 제품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직접 계산하여
부과하기도 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기도 하는데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가 크게 변동될 요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경비내역도 그 명칭보다는 실제 내용을 보고 원가성이 있는 것
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가성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동일한 명칭이라도 재료비 또는 일반관리비와 중복계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술료, 외주가공비 등과 같이 별도 계상
하여 주는 경우에는 배부계산시 그 비목을 불인정하여야 한다.

<경비의 비목별 계산방법>

구 분	내 용
직접계산하는 항목	·실발생비용을 증빙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거나 계약목적물에 실제 투입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용 ·기술료, 특허권사용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감가상각비 등
배부계산하는 항목	·계약목적물 제조에 직접 대응이 되지 않고 배부계산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경비과목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리수선비 등

(2) 경비배부를 통한 산정방식

- 경비는 상기의 비목별 계산방법중에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적용하여 직접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 계산할 수 있다.

가. 기계경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 기계의 경비산정 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계상시기

-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 (2)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 (3)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 건설 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년7월22일)

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2.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하되 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한다.

<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요약>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년 7월 22일)

항 목	사 용 기 준
1.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2. 안전시설비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
3.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5. 안전보험 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수지도비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8. 본사 사용비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100%
사용기준	30%이상	50%이상	70%이상	공정율 이상

[주]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보험요율의 적용

- (1)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수리대상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
- (2)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총공사중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총공사중에 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있고 그 공사가 사업종류를 달리할 때에는 달리한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일괄적용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종류로 분류된 건설공사를 행할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3)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주거용 건축물(기숙사) 661㎡이하, 기타 건축물(공장) 495㎡이하 규모의 건축공사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적용한다.
 - (나) (가)호 이외의 건설공사(기계장치공사, 중기설비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등)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

- (1) 법 제15조 단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나)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다) 건설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라) 가사서비스업
 - (마) (가) 내지 (라)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바)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라. 경비비목별 비용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2005.1 대한건설협회발표))

가) 공사종류별 (재료비 + 노무비)

[2003년완성공사 경비율]

비 목	공 사 종 류			
	토 목	건 축	산업설비	조 경
1. 전 력 비	0.157	0.264	0.207	0.119
2. 수 도 광 열 비	0.560	0.599	0.680	0.262
3. 운 반 비	1.855	0.471	1.034	1.472
4. 기 계 경 비	19.106	2.960	6.587	7.931
5. 특 허 권 사 용 료	0.032	0.000	0.000	0.000
6. 기 술 료	0.224	0.034	0.201	0.004
7. 연 구 개 발 비	0.895	0.130	0.687	0.680
8. 품 질 관 리 비	0.020	0.006	0.024	0.091
9. 가 설 비	0.169	0.175	0.179	0.079
10. 지 급 임 차 료	2.578	1.015	0.544	1.792
11. 보 험 료	3.555	1.962	2.851	2.318
12. 복 리 후 생 비	3.871	1.879	6.537	3.159
13. 보 관 비	0.030	0.011	0.000	0.037
14. 외 주 가 공 비	0.504	0.473	0.005	0.022
15. 안 전 관 리 비	0.867	0.496	0.475	0.975
16. 소 모 . 사 무 용 품 비	1.829	0.989	0.944	1.907
17. 여 비 . 교 통 . 통 신 비	0.877	0.345	1.345	1.341
18. 세 금 과 공 과	0.480	2.128	0.467	0.469
19. 폐 기 물 처 리 비	0.320	0.163	0.010	0.200
20. 도 서 인 쇄 비	0.482	0.189	0.520	0.235
21. 지 급 수 수 료	6.653	6.792	6.696	1.868
22. 환 경 보 전 비	0.026	0.008	0.005	0.124
23. 보 상 비	0.517	0.346	0.228	0.103
24. 안 전 점 검 비	0.046	0.018	0.017	0.207
25. 퇴 직 공 제 부 금 비	0.048	0.021	0.028	0.028
26. 기 타 법 정 경 비	0.581	0.710	0.504	0.413
27. 감 가 상 각 비	0.700	0.153	0.911	0.305
28. 하 자 보 수 비	0.617	0.878	1.744	0.243
29. 현 장 관 리 비	4.698	5.319	10.179	6.267

나) 공사규모별 (재료비 + 노무비)

비 목	공 사 규 모 별					
	5억 미만	5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200억미만	200억이상
1. 전 력 비	0.073	0.152	0.262	0.290	0.392	0.286
2. 수 도 광 열 비	0.117	0.234	0.481	0.633	0.928	0.854
3. 운 반 비	0.898	0.927	0.904	0.928	0.759	0.540
4. 기 계 경 비	9.801	8.631	6.620	7.328	6.139	3.385
5. 특 허 권 사 용 료	0.004	0.014	0.000	0.000	0.000	0.004
6. 기 술 료	0.010	0.053	0.146	0.135	0.205	0.046
7. 연 구 개 발 비	0.020	0.088	0.312	0.658	0.385	0.375
8. 품 질 관 리 비	0.007	0.008	0.013	0.003	0.035	0.006
9. 가 설 비	0.084	0.118	0.123	0.216	0.327	0.194
10. 지 급 임 차 료	0.468	0.600	1.069	1.715	1.874	1.749
11. 보 험 료	1.743	1.984	2.500	2.860	2.793	2.313
12. 복 리 후 생 비	1.440	1.898	2.593	3.179	3.425	2.512
13. 보 관 비	0.030	0.040	0.003	0.001	0.002	0.000
14. 외 주 가 공 비	0.691	0.759	0.798	0.345	0.404	0.196
15. 안 전 관 리 비	0.625	0.602	0.744	0.689	0.773	0.426
16. 소 모 .사 무 용 품 비	1.265	1.335	1.729	1.587	1.350	0.761
17. 여 비 .교 통 .통 신 비	0.253	0.340	0.582	0.667	0.650	0.526
18. 세 금 과 공 과	0.181	0.297	0.899	1.435	2.603	3.070
19. 폐 기 물 처 리 비	0.207	0.302	0.469	0.267	0.208	0.034
20. 도 서 인 쇄 비	0.057	0.117	0.207	0.244	0.298	0.381
21. 지 급 수 수 료	0.801	1.447	3.107	4.948	8.267	12.048
22. 환 경 보 전 비	0.020	0.019	0.012	0.004	0.014	0.006
23. 보 상 비	0.021	0.098	0.321	0.511	0.607	0.551
24. 안 전 점 검 비	0.023	0.030	0.028	0.033	0.025	0.017
25. 퇴 직 공 제 부 금 비	0.002	0.020	0.067	0.045	0.051	0.019
26. 기 타 법 정 경 비	0.233	0.312	0.600	0.505	0.640	1.060
27. 감 가 상 각 비	0.127	0.132	0.203	0.276	0.408	0.408
28. 하 자 보 수 비	0.053	0.093	0.341	0.617	1.183	1.577
29. 현 장 관 리 비	4.246	4.869	5.108	6.626	6.561	5.417

다) 공사기간별 (재료비 + 노무비)

비 목	공 사 기 간 별			
	6개월 이하	7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37개월 이상
1. 전 력 비	0.086	0.183	0.291	0.284
2. 수 도 광 열 비	0.126	0.219	0.769	0.860
3. 운 반 비	0.643	0.823	0.652	0.931
4. 기 계 경 비	5.999	8.033	4.965	6.402
5. 특 허 권 사 용 료	0.000	0.018	0.000	0.008
6. 기 술 료	0.058	0.032	0.058	0.164
7. 연 구 개 발 비	0.069	0.246	0.233	0.570
8. 품 질 관 리 비	0.006	0.007	0.008	0.017
9. 가 설 비	0.121	0.138	0.172	0.245
10. 지 급 임 차 료	0.500	0.656	1.339	2.320
11. 보 험 료	1.687	1.950	2.065	3.404
12. 복 리 후 생 비	1.391	1.757	2.209	4.056
13. 보 관 비	0.070	0.022	0.003	0.000
14. 외 주 가 공 비	0.662	0.833	0.388	0.109
15. 안 전 관 리 비	0.502	0.573	0.584	0.547
16. 소 모 . 사 무 용 품 비	1.065	1.251	1.066	1.243
17. 여 비 . 교 통 . 통 신 비	0.268	0.300	0.438	0.880
18. 세 금 과 공 과	0.190	0.497	2.942	1.471
19. 폐 기 물 처 리 비	0.293	0.235	0.182	0.092
20. 도 서 인 쇄 비	0.048	0.088	0.247	0.549
21. 지 급 수 수 료	0.868	1.416	8.853	11.078
22. 환 경 보 전 비	0.015	0.015	0.009	0.010
23. 보 상 비	0.076	0.118	0.496	0.545
24. 안 전 점 검 비	0.021	0.022	0.026	0.024
25. 퇴 직 공 제 부 금 비	0.003	0.017	0.025	0.052
26. 기 타 법 정 경 비	0.234	0.345	0.996	0.593
27. 감 가 상 각 비	0.121	0.139	0.213	0.680
28. 하 자 보 수 비	0.091	0.146	1.147	1.395
29. 현 장 관 리 비	3.836	5.315	6.135	4.582

마.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2004. 9.)

가) 의무가입대상공사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1항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0억원이상인 공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다 음 -

◎ 조달청 원가계산적용기준 (2004. 9. 1. 입찰일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공제부금비산출 적 용 요 율	토목공사 : 직접노무비 × 1.37% 건축공사 : 직접노무비 × 1.46%	※ 준설공사는 제외 토목외의 공사(설비, 전기, 조경 등)는 건축공사 요율 적용

1) 손해보험료 (공사의 경우)

가) 모든 공사는 선택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PQ대상공사와 대형공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총원가 × 보험료율을 원가계산시 계상한다.

(1)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를 곱하여 계상한다.

(2)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사. 일반관리비 계산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일반관리비 중에서도 그 비중이 커서 운반비나 포장비 등을 별도 계상하는 경우에는 비율계산시 제외한다.

$$o\text{일반관리비} = \text{공사원가(순공사원가)} \times \text{일반관리비율}$$

아. 이윤계산

-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부가가치에 대한 이윤 개념으로서 제조원가 중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에 이윤율(상한선)을 곱하여 계상한다.
- 2) 이윤 = (총원가 - 재료비 - 외주가공비 - 기술료) × 이윤율

가) 이윤율

공 사	: 50억미만	: 15.0%
	50-500억미만	: 13.5%
	500억이상	: 12.0%

자. 부가가치세

개별적용이 아닌 총액적용 :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계약목적물 전체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를 포함시켜 적용한다.

<2004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단위 : %]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직노>×율		<노>×율	<적노>×율
		토목,조경,산 업설비,기타(전문,전기통 신등)	건축		
5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10.8	10.7	[산재보험료] : 3.3 [고용보험료] ·1등급:1.15 ·2등급:0.84 ·3등급:0.71 ·4등급이하: 0.68 ※ 조달청유 자격자명 부 기준 (2003.12. 17공고)	[건강보험료] : 0.52 [연금보험료] : 0.99 [비교검토사 항](당해공사 상시근로자노 무비×건강 2.105%, 연 금 4.5%)비 교후 낮은 금액 적용)
	7~12개월이하(365일)	11.3	11.2		
	13개월이상 (366일)	11.8	11.7		
5억~3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11.1	10.9		
	7~12개월이하(365일)	11.6	11.4		
	13개월이상 (366일)	12.1	12.0		
30억~5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11.3	11.2		
	7~12개월이하(365일)	11.8	11.7		
	13개월이상 (366일)	12.4	12.2		
50억이상	6개월이하(183일)	11.3	11.2		
	7~12개월이하(365일)	11.8	11.7		
	13개월이상 (366일)	12.4	12.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토목및산업설비-[(재+직노+산출경비)×0.0109%+6.3]×공기
건축 - [(재+직노+산출경비)×0.0109%+6.3]×공기(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23억(추정가격+부가가치세)~34.6억(추정가격+부가가치세)미만 : 0.019%
 34.6억(추정가격+부가가치세)~100억(추정가격)미만 : 0.028%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27%
 300억(추정가격)~1000억(추정가격)미만 : 0.025%, 1000억(추정가격)이상:0.024%
 ※ 최저가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토목및산업설비 0.019%, 건축 0.022%의 요율을 적용함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수 의 대 상 : 공통요율(0.58%)+해당업체요율
 ·기 타 공 사 : 4등급이하 요율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공사규모	공사기간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5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7~12개월이하(365일) 13개월이상 (366일)		일반건설 -갑:2.48, -을:2.66 특수및기타:1.24 철도궤도:2.33 중건설:3.18
5억~3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7~12개월이하(365일) 13개월이상 (366일)	토목공사: 1.37 준설공사 : 0 건축공사 : 1.46	일반건설 -갑:1.81+3,294천원 -을:1.95+3,498천원
30억~5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7~12개월이하(365일) 13개월이상 (366일)	※ 토목이외 공사는 건축공사 요율적 용	특수및기타:0.91+1,647천원 철도궤도:1.49+4,211천원 중건설:2.15+5,148천원
50억이상	6개월이하(183일) 7~12개월이하(365일) 13개월이상 (366일)		일반건설 -갑:1.88, -을:2.02 특수및기타:0.94 철도궤도:1.58 중건설:2.26
<p>○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p> <p>○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p> <p>○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제2002-15호)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 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또는 궤도, 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리정리포함), 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 일반건설(갑) 적용) 			

공사규모	공사기간	기타공사				환경 보전비	일반 관리비	이윤
		<재+노>×율						
		토목	조경	건축	산업 설비			
5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7~12개월이하(365일) 13개월이상 (366일)	5.0 5.3 6.0	4.7 4.9 5.7	4.8 5.0 5.7	5.0 5.2 6.0	○재개발, 재건축 0.7% ○항만, 댐, 택지 개발 0.5% ○플랜트, 상수도, 도시철도,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비주거용건축 0.3% ○기타, 공동주택 0.2%	50억미만 : 4.7 50~500억미만 : 4.15 500억이상 : 3.6	50억미만 : 15.0 50~500억미만 : 13.5 500억이상 : 12.0
5억~30억 미만	6개월이하(183일) 7~12개월이하(365일) 13개월이상 (366일)	5.4 5.6 6.3	5.0 5.3 6.0	5.1 5.3 6.1	5.3 5.6 6.3			
30억~50억 미만	6개월이하(183일) 7~12개월이하(365일) 13개월이상 (366일)	5.9 6.2 6.9	5.6 5.8 6.6	5.7 5.9 6.6	5.9 6.1 6.9			
50억이상	6개월이하(183일) 7~12개월이하(365일) 13개월이상 (366일)	5.9 6.2 6.9	5.6 5.8 6.6	5.7 5.9 6.6	5.9 6.1 6.9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 내역서에 환경보전비 항목이 계상된 경우 환경보전비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1) 의의

- 용역은 그 자체의 특성, 내용의 상이성, 종류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발주대상 목적물별로 일률적인 원가계산제도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이에 따라 많은 종류의 용역중 어느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용역간의 성격이 유사한 학술연구용역을 중심으로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한 것이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4장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방식이며, 그 이외에 엔지니어링 사업, 측량용역 등 관련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학술연구용역의 개념

- 학술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산정기준

(1) 인건비

- 인력기준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적용기준 : 당해목적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급료
 - 가. 소요인원 × 기준단가로 적용
 - 나.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400%), 퇴직급여충당금 반영이 가능하다.
 - 다. 기준단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로 조정적용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24조 2항)
- 연구원의 수준
 - 책임연구원 : 지휘, 감독, 결론도출 (대학교수 수준)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대학조교 수준)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수행자 (조교 수준)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200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금 액				일/인건비
	기 본 급	상 여 금	퇴직충당금	계	
책임연구원	1,942,822	647,607	215,869	2,806,298	112,251
연구원	1,235,043	411,681	137,227	1,783,951	71,358
연구보조원	843,928	281,309	93,769	1,219,006	48,760
보조원	548,853	182,951	60,983	792,787	31,711

- ※ 1) 2005년도 기본급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2200.04-105-8. 2003.12.26)중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시 인건비 산정 기준(제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단가를 산정함.
- 2) 상여금 - 기본급의 년400% 계상
- 3) 퇴직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에 대하여 년 1/12 계상
- 4) 월 근무일수 25일 기준

(2) 경 비

- 경비는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등이 계상이 가능하다.

가. 여 비

-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국내여비는 시외 여비에 한하며,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여비기준(공무원 여비규정)
 - 책임연구원 : 제2호 등급
 - 연구원 : 제3호 등급
 - 연구보조원 : 제4호 등급

나. 유인물비 : 조달청 인쇄요율 적용(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등)

다.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라. 시약 및 연구 용역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비용

마. 회의비 :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등 소요경비(참석자 수당은 예산 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

바.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 임차료, 회의장 사용임차료등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료, 우편료

아. 감가상각비 :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자. 제세액 : 해당되는 관세, 특소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 기타비용

- 일반관리비 : 순원가(인건비+ 경비) × 일반관리비율 (5%)
- 이 운 :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운율 (10%)
- 부가가치세 : 총원가 × 부가가치세율
-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Chapter

4

예정가격 작성 실무

1. 예정가격의 개념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 예정가격 기초조사
4. 예정가격 작성 절차

제4장 예정가격작성 실무

1. 예정가격의 결정

1) 예정가격의 개념

(1) 의의

-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제적인 구매를 위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가격을 조사하여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이다.
- 이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 체결시에는 동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이는 낙찰자결정의 기준이 되고, 물가변동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이 되며, 저가투찰에 대한 차액보증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등 정부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2)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령 제7조의 2(예정가격의 비치)
- 국가계약법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3) 예정가격의 범위

- 물품가격을 비롯한 계약대상의 모든 가격을 포함한다.
- 예정가격 결정시 제품본체의 가격에 아래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조사하여야 하며, 본체가격에 포함되었으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제품에 계상되지 아니 하였으면 포함하여야 한다.

<예정가격 결정시 아래가격의 포함여부 조사>

내 용	비 고
운반비	납품장소도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운반비가 소요되는 제품
설치비	현장에 설치시 설치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 제품이나 시스템 장비
인·허가비용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용은 가능한 계약자에게 포함해서는 안됨.
시험·검사비용	제품출하과정의 시험검사비용이 아니며,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포함시켜야 함.
각종 세금 등	
기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금액	

(4) 예정가격의 비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 등에 부칠 경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가격 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근거규정	예정가격 생략의 경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
시행령 제70조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특정조달시행규정 제6조	<p>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으로서 특례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용역과 기계·기재류·철재류·식료품류·동물류·화공품류(비료제외)·약품류·유제품·지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으로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2)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3)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4)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경우 6)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 개산계약 : 개발품 제조, 시험, 조사, 연구용역 계약에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의 계약

(5)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시행령 제8조)

-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총액에 의한 방법과 단가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가. 총액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총액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 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 장기소요물품제조 경우에는 총 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규모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나.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단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17조 제2항]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 예정가격의 기준

- 각종 계약대상 품목 중에는 규격의 표준화와 유통의 보편성 등으로 시중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기도 하고, 신규 개발품이거나 규격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적정한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에도 구매물량이 대량이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거래실례가격이 있다고 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그러므로 각 기관에서 계약을 위하여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계약 대상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의 유무와 수급상황, 이행의 난이도, 수량의 정도, 이행기간, 기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계약법시행령)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 개발품 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 부품을 국산화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3.12.11>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사항,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 예정가격 적용순위

- ① 법령에 의한 가격
- ② 적정한 시중 거래실례가격
- ③ 원가계산가격
- ④ 감정가격
- ⑤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⑥ 견적가격
- ⑦ 해외가격 등 기타

※ 주의사항

-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의 가격조사와 입찰이라는 경쟁구도를 거친 구매실례가격이 상당한 가치를 지니며, 시장의 변동이 없을 경우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어떤 품목은 다년간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실례가의 적용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 추진시마다 처음 계약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경쟁구도를 거치지 아니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미확인 하였기 때문이다.

3. 예정가격 기초조사

(1) 가격의 종류

가. 거래실례가격

- 거래실례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 명시한 아래가격을 말한다. 시장거래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이는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말한다.

②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 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란, 민간법인이 발행한 물가지 중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거래실례가격이란 상거래상(商去來上) 실제로 거래가 성립되어 대금이 결제되었거나 거래가 가능한 가격으로서 이에는 세금계산서 가격, 계약서 및 매입매출대장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가격 등이 있다.

나. 최고가격

- 일종의 통제가격으로서 최고가격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의 가격과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거래의 상한가격으로 공공요금 등이 그 예이다.

다. 행정지도 가격

- 행정지도 가격이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라. 업자공표 가격

- 업자공표 가격이란 상품의 성능·규격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 전문가격지에 게재되고 있는 많은 가격이 이에 속하며 이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이므로, 수량의 많음과 적음, 기타 납품조건 등 제반 여건과 수요자와의 협상에 의하여 실제 계약가격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마. 경제단체 공표가격

- 경제단체 공표가격이란 전국경제인 연합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등이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호응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를 위하여, 품목을 선정하고 제조업체 및 해당조합과 협의하여 유통단계별로 공장도, 도매, 소매가격 등으로 자율적으로 표시한 가격, 즉 생산자 단체나 경제단체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 기준가격을 말한다.

바. 한국은행 조사가격

- 한국은행 조사가격이란, 정부의 경제정책수립 및 그 성과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매물가지수에 채택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한국은행 조사가격을 말한다.
- 한국은행 조사가격은 조사대상 품목별로 주요 조사대상 지역과 각 조사대상 지역별로 조사 대상처를 선정하여 조사한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며, 매월 5일, 15일, 25일로 조사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가격은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공장도 가격,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 도매단계의 가격도 조사한다.
- 한국은행 가격조사 품목은 행정지도 품목으로 되어 있어, 한국은행 조사가격은 행정지도 가격과 일치하거나 연동되어 있다.

사. 조달청장 조사통보가격

-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말한다.

아. 감정가격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자.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 등 객관적인 증빙가격이 없고,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이 유사하여 기능이나 성능 등이 비슷한 제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한다.

차. 견적가격

- 가격기준이 없는 경우이거나 참고가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 대상자 또는 제 3자에게서 직접제출 받는 가격을 말한다.

(2) 가격조사의 방법

가. 가격조사 대상의 확인

- ① 계약대상의 구매목적은 정확히 파악 하므로써 이에 적합한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매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 부서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구매요청 하였는지, 어디에서 사용될 것인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등이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 구매는 어떤 사업 투자의 구체적 시행이므로 투자의 목적을 구매 담당자가 명확히 이해하여야 구매업무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계약대상에 대한 규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규격은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경제적인 금액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격작성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용량, 능력 등 규격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는 계약대상의 구조, 재질, 특성 등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단위 등에 대한 기초지식도 필요하며, 본인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제품의 규격에는 상표규격, 설계규격, 성능규격 등이 있는데 상표규격의 경우 특정제작자의 특정한 모델이나 상표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므로 특정제품만이 수요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지, 표시된 것과 동등 이상의 다른 상표나 모델도 구매 가능한 것인지 경제적인 구매를 위하여 반드시 대체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설계규격은 주문생산품, 시스템장비, 프랜트 등에 사용되는 규격이다. 성능규격은 제품의 치수, 재료, 구성보다는 그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규격으로 얼마나 성능이 발휘되는가에 중점이 있다. 또한 규격을 검토함에는 경제성, 시장성, 경쟁성, 최신성, 표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 제품의 시장규모나 유통구조 등 구매에 필요한 많은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국내의 시장정보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세계 시장도 국내시장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때가 많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할 때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비경제적인 계약을 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자기가 맡은 담당 품목에 대하여는 평소 이와 관련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철저한 가격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특히 오늘날은 국제시장이 국내시장과 구별하기 어려운 변화가 도래하여 해외정보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 해외의 풍부한 정보를 저렴한 경비로 얻을 수 있다.

나. 거래가격의 조사방법

① 가격조사 대상업체 선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업체를 선정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이상의 업체(동 시행규칙 제 35조 1항)로 한다.
-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업체를 선정하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의 가격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면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 상대자인 조합과 조합의 물량배정 등을 참작한 2개이상의 배정업체를 선정한다.
- 계약대상업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1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되 수량 등 구매조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가격조사 방법

- 가격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의 다수 및 전국분산 등으로 전수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거래량을 감안 표본조사 방법 등 실현 가능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 가격조사 자료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매계약서, 거래장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또는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격조사 대상업체로부터 가격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입하고 책임 있는 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거래가격의 적용기준

ㄱ. 거래실례가격 적용대상

-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물품구매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시중에 적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 원가계산가격 중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의 적용도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 거래의 실례가격을 적용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한다. (동시행령 제9조 제1항 1호)

ㄴ. 거래실례가격 적용단가

- 단일업체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자료를 조사하여 조사된 가격과 거래량을 감안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수업체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량 또는 거래빈도를 감안한 가중평균가격 또는 최빈 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 조사된 최저가격(재무 구조가 양호한 업체의 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조사가격 중 덤핑가격 등 보편적인 상거래가 아닌 비정상 거래에 의한 가격을 제외한다.

ㄷ. 거래실례가격 적용 유의사항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3) 예정가격 결정시 고려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계약수량
- 이행기간
- 시장수급상황
- 특이사항 등 계약조건
- 기타 계약에 영향을 주는 제반여건

4. 예정가격 작성절차

가. 예정가격 기초조사서 작성

예정가격 기초조사서에는 품명, 수량, 주요규격, 구매관리번호, 입찰일시, 예산액, 조사금액, 납품기일, 계약방법 등 입찰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가격조사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이 재무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기초조사 기준의 작성

기초조사 기준에는 가격조사공무원이 가격 조사한 기준이 간략하게 요약된다. 예를 들면, 법적 근거와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서 어떤가격을 조사하였는지를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

다. 가격조사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가격 조사한 내용이 기재된다. 기초조사 기준에는 가격 조사공무원이 가격 조사한 기준이 간략하게 요약된다. 예를 들면, 법적 근거와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원가계산가격을 적용한 내용을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

라. 예정가격조서

이는 재무관이 결정하는 가격으로서 총액과 단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예정가격은 반드시 예정가격 봉투에 넣어서 봉인한 다음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재무관은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상에 명기하고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분류별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분류별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3. 기술용역입찰유의서
4.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 관한 준칙 중
별표
5.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6. 노임단가기준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
중노임적용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등
7.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2 (1997.01.01)
 회계예규 2200.04-105-3 (1998.02.20)
 회계예규 2200.04-105-4 (1998.04.07)
 회계예규 2200.04-105-5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05-6 (1999.12.13)
 회계예규 2200.04-105-7 (2001.02.10)
 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과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4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단위당가격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 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제조원가계산

제6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0조 제3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협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 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 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 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 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 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 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3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장 공사원가계산

제14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 부품, 외장재료 및 제18조 제3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7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경비)

-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푸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 보험료는 제20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 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 산업 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 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 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총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9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1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5	5천만원 미만	6.0
5억원 ~ 3억원미만	5.5	5천만원 ~ 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 이상	5.0

제20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0조의2(공사손해보험료)

- ① 공사손해 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 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 보험료율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장 용역원가계산

제1절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제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23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인건비)

- ①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 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5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가.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여비 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6조(일반관리비등)

-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②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7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 ① 학술연구용역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를 활용하여 제24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6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26조 제2항의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제5장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9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대상기관

- 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무기자격 2급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각 “2인” 중 1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제1호 “나” 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일 것.

라. <삭제 99.9.9>

제30조 <삭제 99.9.9>

제31조 <삭제 99.9.9>

제32조 <삭제 99.9.9>

제33조(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99.12.13 단서신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당해 원가계산전문분야 책임교수(책임연구원) 및 연구소장이 동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특례설정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6조,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1조, 제19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7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예규는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준칙”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 회계예규 2200.04-105-5 부칙 제2항 삭제

<01.02.10>

- ① 이 예규는 2001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준칙”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03.12.26>

-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작성준칙”은 폐지한다.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별표2] 공사용가계산서

[별표3] 일반관리비율

[별표4] 학술연구용원가계산서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 생산량 :

비목		구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체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비부산물 등(△)			
		소계			
체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조 원 가 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X()%]				
이 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X()%]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 부분의 총원가X()%]					

(별표 3)

일반관리비율

공사명 : 공사기간 :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 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고
인 건 비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04')

등 급	구 분	금 액(원)
책 임 연 구 원		월 1,875,311원
연 구 원		월 1,192,127원
연 구 보 조 원		월 814,603원
보 조 원		월 529,781원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1 (1997.01.01)
 회계예규 2200.04-141-2 (1998.03.31)
 회계예규 2200.04-141-3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41-4 (2003.12.26)
 회계예규 2200.04-141-5 (2004.04.06)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기술용역 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 의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 상대방이 수행하여야하는 업무로서 과업 내용서에 기재된 기술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 내용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 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을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령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 이라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기술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 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기술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 ① 구두에의한 통지. 신청.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이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등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0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수행의무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기술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자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체결후 연대보증인이 그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 보증제도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는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기간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을 또는 자수조정을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 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수 있으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3.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 4.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 기간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 ⑤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의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제 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제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기술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기술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기술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기술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선정, 지급한다.
- ⑤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 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당해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6. 기타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발주기관은 제29조 제1항각호의 경우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2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②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술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험)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술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기술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공사이행 보증제도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기술용역 관련자료의 제출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장이 직접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1-2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03.12.26>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1-3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한다.

<04.4.6>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예규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40-3 (1997.01.01)

회계예규 2200.04-140-4 (1998.02.20)

회계예규 2200.04-140-5 (1999.09.09)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소식)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통
3. 인감증명서1통
4. 기타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 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7.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 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각중앙관서의장이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 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등 당해용역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 허가, 등록, 신고등도 당해 용역관련법상의 면허, 허가, 등록, 신고등은 포함)을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 3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
-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 받고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포함한다.이하같다)으로 날인 하여야한다.
-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등]

-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명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성립]

-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수 있다.

제12조[입찰의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하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한다.

제14조[재입찰및 재공고입찰]

-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 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 ① 제12조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 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수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 ①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장기계속기술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기술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기술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기술용역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기술용역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기술용역 및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기술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 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따라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 1.법제28조제1항각호의 1에정한사유
- 2.특례규정제26조에정한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유의서에 명시되지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 ① 이회계예규는 1999년9월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가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2200.04-140-4 "기술용역입찰유의서"는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 관한 준칙 중 별표

회계예규 2200.04-146 (1995.07.10)

회계예규 2200.04-146-1 (1999.09.09)

[별표] 표준가격조사요령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 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가격, 생산자 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시장거래 가격"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 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생산자 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 시방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 가격을 말한다.

3."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 고시 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 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 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 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 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부가가치세등 국세의 포함여부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져야한다.

1. "판매방법"이라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 ① 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당해상품의 유통성, 장래성 및 다른상품에의 영향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 지방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 ① 조사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당해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 ① 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조건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권,경인원,영동권,중부권,호남권,경남권,경북권 및 제주권을 그 기본으로 한다.
- ② 조사대상도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로 중심도시와 2개이상의 부심도시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 ① 가격조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의 품귀, 2중 가격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 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 요원등]

① 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 조사요원은 20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 지역별 각1인을 포함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 운용하여야 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 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조사 요구원 외에 품셈능력이 있는 자가 그 분야(토목, 건축, 설비등)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위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별지 1호]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 인 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④법인설립허가관청	
<p>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 관한 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p> <p>재정경제부 장관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 관한 준칙 제2조2항에 규정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 	

22451-01511일
'93.5.18 승인

201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3호]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① 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② 법인명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변 경 내 용	변경전의 사항	변경후의 사항
<p>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 관한 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등록사항 중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재정경제부 장관 귀하</p>		

22451-01611일
'93.5.18 승인

201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별지제4호서식)

- (1) 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 (2) 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 (3) 코드번호 부여후에 기입
- (4) 수록단위품종 편성후에 기입
- (5) 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 (6) 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 (7) 상품의 외관상의형태,형상
- (8) 공진청에서 공인된 KS규격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 (9) 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 (10) 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 (11) 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 (12) 규격상에 있는 총품목수와 시중에서유통되는 품목수
- (13) 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높은 품목과 그거래비중
- (14) 품질,규격,형식,성능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 (15) 총생산자수
- (16) 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 (17) 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 (18) 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 (19) 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 (20) 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생산자공표,행정지도로 구분
- (21) 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 (22) 유통단계중 조사대상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 (23) 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 (24) 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 (25) ~ (26) 생략
- (27) 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 (28) ~ (29) 생략
- (30) 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 (31) 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2) 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3) 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4) 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 (35) 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 (36) 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가중 자문을 구할수 있는자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1989.03.08 회계 2210-591

I. 간접노무비의 계산

(근거규정)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 제8조, 제16조, 제25조

1. 직접계산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공식>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1) 노무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정부노임단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직종의 단가는 동기준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함.

(주) 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고시가 폐지됨.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시중노임 단가)이 적용됨.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①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 1) 현장소장
 - 2)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 4) 노무관리원
 - 5) 자재·구매관리원
 - 6) 공구담당원
 - 7) 시험관리원
 - 8) 교육·산재담당원
 -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 10) 경비원
 - 11)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②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함.
- *노무량계산시 붙임 예시 「대규모 공사의 공사현장관리사무소 인력배치도」를 참조하여 적정인원을 적의 계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 (1)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2) 위 직접노무비에 원가계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간접노무비율, 즉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를 곱하여 계산함.

<공식>

$$\begin{aligned} \text{간접노무비} &= \text{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times \text{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end{aligned}$$

나. 간접노무비율의 계상방법

(1)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 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붙임 「대규모공사의 현장관리사무소 인력배치도(예시)」를 참조할 수 있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위 계상방법에 대한 보완적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서 제시한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 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 다 음 -

(단 위 : %)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 (포장, 준설등)	15.5
	기타 (전문, 전기, 통신등)	15
공 사 규 모 별 *품셈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원가기준	5억원 미만	14
	5 ~ 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 ~ 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활용예시(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II. 경비의 계산

1. 근거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 제25조

2. 계상기준

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그 이외의 비목은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하거나 또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등)를 분석한 후 비율산정하여 계산한다.

*경비비목 원가계산시 그 처리기준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준칙”에 따르되, 그 기법처리는 기업회계방식을 활용

3. 계상방법(단순배분처리방법 예시)

가.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 원가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동 명세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예시>

○ 재료비 : 60
 ○ 노무비 : 20
 ○ 경비 : 20
 .복리후생비: 1.5
 .
 .

<공식>

$$\text{복리후생비율} = \text{복리후생비} /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 1.5 / (60 + 20) = 1.87 \%$$

*동 명세서상에 외주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위의 복리후생비율이 하도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석되기 때문임.

*위 비율은 2개업체 이상의 평균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나"에서 산정한 비율을 곱하면 복리후생비가 계산된다.

<공식>

$$\text{복리후생비} = (\text{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 \times \text{복리후생비}$$

*이와 같은 비율의 적용방식은 동비율의 합리적인 산정이 주요과제인바, 특정업체의 원가계산자료에 의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임단가기준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등

1995.01.13 회제 45101-45

1. 회제 45101-1881('94.12.14)의 관련입니다.
2.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는 노임단가기준은 94년까지는 구재무부장관이 결정·고시(이하 “정부고시노임”이라 함)하였으나 95년부터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조사·공표한 가격(이하 “시중노임”이라 함)에 의하되 동가격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가감(주: '95.7.6.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감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되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정부계약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기관의 시중노임의 조사·공표

1) 시중노임의 조사·공표방법

조사기관은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등으로서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부문(광·전자통신, 문화재 및 원자력 부문 포함. 이하 같음) 시중노임을 연2회 직종별로 조사하여 “일간건설”과 동협회가 발간하는 “거래가격” 및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게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조부문 시중노임을 연1회 직종별로 조사하여 “중소기업신문” 및 동중앙회가 발간하는 “직종별 임금보고서”에 게재하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간하는 가격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도 동 시중노임을 게재함.

- 2) 시중노임의 적용시점별 기준예정가격작성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시중노임 적용은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공사 및 제조부문) 적용시 참고할 사항

- 1)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2)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은 이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 3)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 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4)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다. 계속공사 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전년도 이전에 계약체결되어 당해년도 이후에 계속되는 공사등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동규칙 동조 제1항 중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또는 동조 제2항의 “지수 등에 변동”과 관련되는 물가변동 시점의 노무비 평균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제1항(현행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규정예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가)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시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times(1+$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다만, 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times(1+$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또한 위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 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시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시중노임 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은 “0” 으로 함.

나)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시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제2항(현행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예 의한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가)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시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평균치 $\times(1+$ 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 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

-다만, 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평균치 $\times(1+$ 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 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

나)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시의 전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평균치

3) 기타사항

위 식중 “물가변동대상기간” 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계약금액조정 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시까지의 기간을 말함.

4) 회계 45101-1881(’ 94.12.14) “노임단가기준결정방법 변경과 이에 따른 시중노임적용요령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은 이를 폐지함.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1997.01.11 회계 45101-6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니 귀 부(원, 처, 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예정가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